

대학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23. 11.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추진, 성과평가 및 환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장기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은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비전과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실행과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학발전기획위원회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총장이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발전계획성과관리위원회는 발전계획의 추진, 평가, 개선 및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발전계획의 관리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본교의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발전계획의 내용)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 대학 인재상 및 핵심역량
2. 대학 현황 및 대·내외 환경 분석
3. 대학의 비전과 전략
4. 대학 특성화
5. 지역사회 협력·기여
6. 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정확보 및 예산 계획
7. 연차별 세부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8. 그 밖에 본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발전계획의 주기) ① 발전계획은 5년을 주기로 하여 직전 발전계획의 기간 만료 1년 전에 수립한다. 다만, 학내외 급박한 교육환경의 변화 등이 있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 또는 보완의 방법으로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전계획의 주기와 수립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발전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6조(교직원의 임무) 본교 교직원과 각 부서장(각 단과대학장, 학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전계획을 함께 준비하고 공동 실행하는 구성원으로서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7조(대학발전기획위원회) ① 총장은 발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대학발전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대학의 비전, 교육목표, 인재상 등 발전방향 설정
2. 대학의 현황 및 환경 분석
3.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수립
4. 대학 특성화
5. 중장기 재정계획
6. 구성원 의견수렴
7.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발전계획성과관리위원회) ① 발전계획 성과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계획성과관리위원회(이하 “성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처장 등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전계획 평가 계획 수립 및 조정
2. 성과지표 설정 및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3. 발전계획 추진성과 점검 및 성과평가
4. 발전계획 개선 및 환류
5. 발전계획 관련 우수 부서 및 교직원 포상
6. 그 밖에 발전계획의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상지대학교발전자문위원회) ① 총장은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 직속으로 상지대학교발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총장이 추대하는 교원, 학생, 직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대학의 비전, 교육목표, 인재상 등 발전방향
2. 발전계획 추진전략
3. 중장기 재정계획
4. 그 밖에 본교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총장은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총괄부서) ① 기획처가 발전계획의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 담당한다.

② 제1항의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전계획 수립, 추진
2. 발전계획 재정투자 계획 수립, 추진
3. 연차별 실행과제 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실적 관리
4. 성과지표 관리 및 환류
5. 그 밖에 발전계획의 수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총장은 발전계획의 수립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주관부서) 발전계획의 실행과제는 각 주관부서(단과대학과 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전계획 연차별 실행과제 추진
2. 실행과제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자체 성과관리
3. 실행과제 추진실적 보고
4. 그 밖에 실행과제의 추진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제12조(발전계획 수립) ① 총장은 발전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발전계획의 내용을 명확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기획처장은 발전계획이 예산 등과 연계되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총장이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교원,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기업,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발전계획은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학교법인 이사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표한다.

제13조(발전계획 추진 및 관리) ① 각 실행과제의 주관부서장은 발전계획의 연차별 성과지표, 성과목표, 주요계획, 추진일정, 예산계획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 실행과제의 주관부서장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실행과제별 추진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장은 발전계획의 각 실행과제별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평가 및 환류

제14조(성과목표 설정) 각 실행과제의 주관부서장은 발전계획의 전략 및 실행과제의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목표를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제15조(성과평가) ① 각 실행과제의 주관부서장은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그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장을 경유하여 성과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는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평가주기, 평가내용,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성과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평가결과 활용 및 환류) ① 총괄부서장은 성과관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각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학년도 실행계획의 수립·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학년도 실행과제, 성과지표, 재정투자 계획 등 발전계획의 내용을 개선 및 조정할 수 있다.

④ 총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교직원 등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총장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기획예산팀-2454, 202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대학발전기획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대학발전기획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대학발전기획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대학발전기획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규정 공포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2023년 7월에 수립된 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5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학교법인 이사회 심의를 거친 발전계획은 이 규정에 의해 수립된 발전계획으로 본다.